여수 웅천 꿈에그린 2단지 입주자모집공고

■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약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. 6.30. 입니다. (무주택기간, 나이, 자격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)
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청약통장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청약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■ 2008년 4월 1일 주택법령 개정 이후,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(주거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)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아파트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"무주택기간, 부양 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"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"청약가점제"가 적용됩니다.
■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"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"이며, "현재은"적용"의 기준으로 합니다.
■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에도 개정 내용을 담은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개정안 (2016.5.20)"이 적용되오니,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청약 순위제에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별 요건 완화 : "1. 2순위 청약요건 간소화
-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: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, 세대주가 아닌 "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(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) 단,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
-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반 절차 : 예치금액 이외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/ 주택규모변경기간(2년)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(3개월) 폐지
-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: 주택소유 수에 따른 차등 감점 폐지
- 소형 지가주택 기준 완화 : 기존 90㎡ 이하 + 공시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, 100㎡ 이하 +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,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
※ 상기 내용 외 제반 사항은 2016.5.20. 개정된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아파트는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1항3호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(여수시)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청약이 가능하며,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(여수시)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.
■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
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1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 6.30)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전라도에 이상인 자 또는 "장애인복지법,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 주택 공급신청자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,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대 구성원이 자녀를 두 자녀에 해당 충족 우선 배정되오니 청약시 신청하신 주택형에 따라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,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대 구성원이 자녀를 세 자녀 이상 두신 경우에 한하여 최하층 우선배정하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우주체 군인으로서 "주택법, 제7조 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(여수시) 거주자로 봅니다.
■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안내
- "주택법,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제54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5년이후는 3년간, 5년이후~3년간 다른 분양주택 (임대주택)의 자는 본 분양전매는는 당초주택 일정 인증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에 제당하지 않는 경우
단 본 아파트는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개정(2012.9.25)으로 비투기과열지구 인증주택 제당청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며, "주택법,제41조의2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,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. 대출 이상자의 본인의 대출부적격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(입주자모집일 당일이 본인의 입주일이내)
-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세한은 청약시점의 법규에 적용을 받으며, 청약 접수시 또는 입시시점승인일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법률 또는 정책변경에 따른 변경될 수 있음.
■ "주택법 제60조 및 제61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